

崔瑀政權下の 文翰官

——“能文”·“能吏”의 人事基準을 중심으로——

趙 仁 成*

I. 머리말

IV. 崔瑀政權下 文翰官의 政治的 位置

II. “能文”과 “能吏”

V. 맺음말

III. “能文”·“能吏”의 品題

I. 머리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高麗 중기 武人政權의 성립은 韓國史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각도에서 행하여진 바 있다.

그런데 기왕의 연구에는 특히 지배 세력의 변화와 관련하여 武人 혹은 武人政權을 다룬 것이 많았다.¹⁾ 한편 이와는 달리 武人政權下에서의 文臣들의 정치적 동향에 관심을 둔 연구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시 文臣들의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崔氏武人政權

* 慶南大學校 史學科 專任講師

- 1) 본고와 관련하여, 특히 武人政權의 지배 기구에 대한 아래의 논문들이 참조된다.

內藤傳輔, ‘高麗時代의 重房及び政房に就いて’, 「稻葉岩吉記念 滿鮮史論叢」, 1938; 「朝鮮史研究」, 1961.

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 「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8.

金成俊, ‘高麗政房考’, 「史學研究」 13, 1962.

金閔坤, ‘麗末鮮初의 尙瑞司一政房에서 尙瑞司로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25, 1964.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 「한국사 7 고려 무신정권과 대몽항쟁」, 1973.

閔丙河, ‘崔氏政權의 支配機構’, 앞의 책.

이 성립하면서 文臣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여졌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文臣들의 진출은 일단 武人政權에 대한 충성내지는 지지를 조건으로 하는, 한계성을 지닌 것이었음도 지적되었다.²⁾ 본고에서 필자는 이러한 기왕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崔氏武人政權下에서의 文臣들의 동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文臣 가운데에서도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당시의 文翰官이다.³⁾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高麗 전기에 있어서 文翰官은 당대의 가장 文章力이 뛰어난 文臣들이 맡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임무가 王言을 짓고,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文翰官은 기본

- 2)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閔丙河, '武臣執權時代に 관한 一考察', 『史學研究』 6, 1959.

朴菡熙, '武臣執權期の文人', 『한국사 7 고려 무신정권과 대몽항쟁』, 1973.

金毅圭, '高麗武臣執權期 文臣의 政治的 動向', 『史學論叢』 3, 1975.

Edward J. Shultz, *The Military-Civilian Conflict of Koryo Dynasty;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1979, Honolulu.

金毅圭, '高麗武人執權期 文士의 政治活動', 『韓治勛紀念 史學論叢』, 1981.

張淑卿, '高麗武人政權下 文士의 動態와 性格', 『韓國史研究』 34, 1981.

南仁國, '崔氏政權下 文臣地位의 變化', 『大丘史學』 22, 1983.

- 3) 여기서 文翰機構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崔氏武人政權下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기관보다는 私的인 정치 기구가 중요시되었고, 崔氏 집권자들의 입장에서 文翰機構 자체보다는 거기에 소속된 인물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관심사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4) 崔濟淑, '高麗翰林院考', 『韓國史論叢』 4, 1981, pp. 18~22.

邊太燮은 高麗의 文翰官을 특히 知制誥로 규정하였는데('高麗의 文翰官', 『金哲俊紀念 史學論叢』, 1983, pp. 188~196), 知制誥가 誥院에서 制詞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단 본고에서는 知制誥가 아니더라도 翰林院·史館·秘書省·寶文閣·御書院·同文院 등 이른바 禁內學官('高麗史' 76 百官 1 通文館) 소속의 관원이면 일단 文翰官으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이것들이 바로 高麗 시대의 대표적인 文翰機構인 까닭이다. 이들 禁內學官에 대한 연구는 翰林院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歷史學報』 52, 1971.

-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中世的 近近政治의 志向—', 『歷史學報』 77, 1977;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周廣吉之, '高麗初期의 翰林院', 『東洋學報』 58—3·4, 1977; 同 補正, '高麗初期의 翰林院과 誥院—宋의 翰林學士·知制誥との關連について—', 『高麗朝官僚制の研究』, 1980.

적으로 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⁵⁾ 그렇다면 王權이 유명무실해진 武人政權下에서 文翰官의 정치적 위치가 어떠하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 필자가 주목한 것은 崔瑀가 인사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能文”과 “能吏”이다. 왜냐하면 “能文”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당시 文翰官의 소임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能文”과 “能吏”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과연 文翰官이 인사에 관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그렇다면 崔瑀執權期에 있어서 文翰官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보고 하겠다.

Ⅱ. “能文”과 “能吏”

崔瑀가 인사 기준으로 “能文”과 “能吏”를 제시하였음은 다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A) ① 崔滋 字樹德 初名宗裕 又名安 文憲公冲之後 天資淳訥 不以表表爲能 小力學 能屬文 康宗朝登第 補尙州司錄 以政最聞 入補國學學諭 ② 崔怡 品題朝士 以

崔濟淑, 앞의 논문.

邊太燮, 앞의 논문.

- 5) 文翰機構는 특히 王權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忠宣王의 개혁을 주도한 것이 詞林院이었다든지(李起男, 앞의 논문, pp. 93~97), 光宗의 개혁에 翰林院學士들이 중심이 된 사실(李基東, 앞의 논문, pp. 267~277) 등은 이를 알려준다. 그리고 최근 邊太燮의 연구에 의하면 高麗의 文翰官인 知制誥는 省郎이 주로 맡았으며, 이로써 국왕은 省郎을 측근의 文翰官으로 이용하여 王權을 신장시킬 수 있었고, 반대로 省郎은 국왕 측근의 草制의 官으로 그 지위를 상승시켜, 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앞의 논문, pp. 205~206).
- 6) 李佑成이 “能文”을 문학적 교양, “能吏”를 행정 실무의 능력으로 해석한 이후(「高麗朝의 “吏”에 對하여」, 「歷史學報」23, 1964, p. 22)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도 결론은 李佑成과 같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본론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文吏俱優者爲第一 文而不能吏 次之 吏而不能文 又次之 文吏俱不能爲下 皆手疏屏風 每當銓注輒考閱之 滋名在下 故十年不調 ③滋嘗作虞美人草歌·水精盃詩 李奎報見而奇之 後怡謂奎報曰 誰可繼公 典文翰者 曰 有國學學諭崔安者 及第金壇 其次也 時李需·李百順·河千旦·李威·任景肅皆有文名 怡欲試其才 令製書表 使奎報第之 凡十選 滋五魁五副 ④怡又欲試吏才 授給田都監錄事 亦敏而勤 (『高麗史』102, 崔滋傳)⁷⁾

위 사료 A)의 단락을 필자가 내용에 따라 나누어본 것인데, 논의의 편의상 우선 “能吏”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能吏”에서의 “吏”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먼저 위(A)④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의하면崔珥는崔滋의 “吏才”를 시험하기 위해 給田都監의 錄事職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給田都監의 錄事는 丙科權務의 胥吏職⁸⁾이므로, “吏”는 일단胥吏로서의 실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기록이 크게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B)① 十九入成均試 二十三以門蔭直受幟頭店錄事 及戊午歲 權臣掃迹 復政王室 簡文士入政堂 公時猶未第 以文才吏幹 無能及者 得居是選 尋入內侍 受大樂署丞 (『許拱墓誌, 『朝鮮金石總覽』上, p. 465)

위 (B)①에 따르면 許拱은 幟頭店錄事로서 “文才”와 “吏幹”이 있어 政堂에 소속될 수 있었다고 한다. 幟頭店錄事는 乙科權務의 胥吏職⁹⁾이므로, 앞서 지적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¹⁰⁾

- 7) (A) ②·③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高麗史節要』18. 元宗 원년 7월 條에 실려 있다. 거기에서는 (A)②의 “文吏俱優”를 “能文能吏”라고 하였는데, 다른 논고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도 후자를 취하였다.
- 8) 『高麗史』77, 百官 2 諸司都監各色. 그런데 給田都監의 錄事는 신분상 記事이하의 吏屬(吏族)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李佑成, 앞의 논문, p. 6). 하지만 그 말은 바 임무는 胥吏의 그것이었다고 생각된다. 高麗 시대 胥吏의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金光洙, ‘高麗時代의 胥吏職’, 『韓國史研究』4, 1969, pp. 10~17을 참조하라.
- 9) 『高麗史』77, 百官 2 諸司都監各色.
- 10) 李佑成은 高麗 시대의 “吏”를 門蔭 출신과 吏族 출신(中央吏職世襲者 및 其人

하지만 비단 胥吏로서의 능력만이 “能吏”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B)② 性清廉 工文詞 歷位臺省 以吏能稱 (『高麗史』 94, 郭元傳)

③ 慶州人 性寬厚 才學淺短 登第 補蔚州通判 不閑吏事 無所可否 但署紙而已 (同上 101, 崔汝諧傳)

우선 (B)②의 郭元은, 그의 傳記에 의하면 胥吏職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에 의해서 그 능력이 발휘된 吏職은 臺省의 관리 곧 중앙관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위 사료에 보이는 문맥의 선후 관계로 보아서도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¹¹⁾

다음 (B)③에서의 崔汝諧는 通判으로서 “吏事”에 익숙하지 (“閑”) 못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吏事”는 지방관으로서 처리해야 할 실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許同正著)으로 刀筆之任 곧 행정 말단의 실무에 종사하는 측이라고 보았다 (앞의 논문, pp. 2~8). 그리하여 武臣집권 이후 “能文能吏”의 관리가 許珙 ((B)①)과 같은 門蔭 출신의 吏가 아닌 科擧 합격자 중에서 그리고 吏族 특히 지방의 鄉吏層에서 많이 나왔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지방 鄉吏의 신분으로 科擧에 급제하여 당당한 관인으로 진출할 때에 刀筆을 家業으로 삼아오던 그들의 실무 기술적 전통 위에 문학적 교양을 아울러 구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p. 22~25). 따라서 李佑成이 파악한 “能吏”의 “吏”는 일단 吏族 출신의 胥吏 혹은 鄉吏의 실무였다고 생각된다.

1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이 참조된다.

及至釐下 改授兵部郎中・三司判官 俄遷衛尉少卿・知刑部事 改爲秘書少監・御書檢討官・知戶部事 公於經術之外 亦以吏幹爲己任 爲仁廟所深知 故自卿寺以至爲朝議大夫・戶部尚書 凡數年間 屢被差出 或以按察副使 澄濟東南列郡 或以兵馬副使 折衝千里 或以察訪 激濁揚清 所臨者有能聲 (金誠墓誌, 「朝鮮金石總覽」上, p. 357).

위 사료에 의하면, 金誠은 “經術” 외에도 “吏幹”으로써 仁宗의 知遇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그가 역임한 관직을 염두에 두면, 그가 “吏幹”으로 알려진 것은 中央官으로서 실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12) 崔濟叔은 앞의 논문, pp. 35~37에서 登第者가 지방에 나가 吏務 즉 행정 사무를 관장하였음을 지적하고, 소위 “能文能吏”의 官人像은 이미 高麗 전기에 정립되어 확실히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 “能吏”의 “吏”는 胥吏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의 실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能文”의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A)③을 보도록 하자. 여기서 崔瑀가 시험하려고 한 “才(能)”은 바로 “能文”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 내용이 書와 表를 짓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能文”은 바로 문장을 잘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高麗 시대의 書는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敕書이고, 表는 箋과 함께 事大文書였던 것이다.¹³⁾ 崔瑀가 李奎報로 하여금 그의 뒤를 이어 文翰을 맡을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였을 때 李奎報가 崔滋가 지은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詩를 염두에 둔 것¹⁴⁾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려준다고 여겨진다. 결국 “能文”은

C) (朴恒) 能文章 長於吏才 (『高麗史節要』 20, 忠烈王 7년 8월)

라고 한 바에 보이는 “能文章”을 줄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¹⁵⁾

한편 앞의 註 11)에서의 金誠에 대한 추측이 허용될 수 있다면, 그가 “吏幹”이 뛰어나서 여러 차례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사실도 지방관의 실무가 역시 “吏”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高麗史』 121, 良吏傳이나 『遼史』 能吏傳에 立傳된 인물들이 모두 지방관이라는 사실도 참조될 수 있다.

13) 崔濟淑, 앞의 논문, pp. 18~19.

14) 崔滋가 李奎報에게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詩를 보여 평가받은 것은 國學的 學諭가 되기 이전의 일인데, 이 사정은 崔滋의 『補閑集』 中; 『高麗名賢集』 2, pp. 121~122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5) 비록 朝鮮 전기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지만, 다음에서도 “能文”이 文學 곧 문장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高靈郡申淑舟·寧城君崔恒等 選能文者二十餘人 以啓曰 凡國家製述 授之此輩 上曰 藝文·弘文館員 亦皆選文學者居之 可令此輩爲之 若更選他人 (下略) (『世祖實錄』 世祖 14년 6월 庚寅)

한편 李佑成은 앞의 註 11)의 “經術”도 “文”에 포함시키고 있다(앞의 논문 p. 23). 하지만 위 世祖代의 경우를 고려하면, “能文”은 經學이나 性理學 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과 같은 宋의 경우도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①今之學者岐而爲三 能文者 謂之文士 談經者 泥爲講師 惟知道者 乃儒學也 (『二程遺書』 6)

Ⅲ. “能文”·“能吏”의 品題

이제까지 앞의 사료(A)③·④를 중심으로 “能文”과 “能吏”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기서 崔瑒가 崔滋 등을 직접 시험한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생각된다. (A)②에서 알 수 있듯이 “能文”·“能吏”의 여부는 모든 文臣에게 적용되는 일반 인사 기준이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다음의 사료가 우리의 주목을 끈다.

(D)① 熙宗朝登第 直史館 累遷尙書左丞 崔怡召置政房 掌銓選 時應吏·兵部選者 無慮數萬 敵一見 無不記其姓名 有陳訴 輒應無少謬 人服其強記 然銓注 一聽於 怡不可否 或問其故 答曰 天假手我晉陽公 吾何聞焉 其阿諛如此 (『高麗史』102, 金敵傳)

위(D)①에 따르면 당시 吏部와 兵部の 인사 대상이 수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표현상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文臣으로서 인사 대상이 되는 자가 상당수였을 것임은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崔瑒가 최종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¹⁷⁾고는 하지만, 그 대상을 직접, 일일이 평가할 수 없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崔瑒가 “能文”·“能吏”의 여부를 모두 병풍에 적어놓고 인사에 임했다고 하는데((A)②), 그것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한 것일까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가 우리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 싶다.

②古之學者一 今之學者三 異端不與焉 一曰文章之學 二曰訓詁之學 三曰儒者之學 欲趨道 舍儒者之學 不可 (同上 18)

16) 이 사실은 “皆手疏屏風 每當銓注 輒考閱之”(A)②에서 분명히 알 수 있으며 崔滋가 10년 동안 쓰이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이다.

17) 위(D)①의 “然銓注 一聽於怡不可否”는 앞의(A)②의 “皆手疏屏風 每當銓注 輒考閱之”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D)② 吏部掌文銓 兵曹主武選 第其年月 分其勞佚 標其功過 論其才否 具載于書 謂之政案 中書擬陞黜以奏之 門下承制勅以行之 國家之法蓋與中原同也 崔忠獻擅廢立 常居府中 與其僚佐 私取政案 注擬除授 授其黨與爲承宜者 入白于王 王不獲已從之 忠獻之子怡·孫沆·沆之子誼 四世秉政 習以爲常 (『櫟翁稗說』 前集 1; 『高麗名賢集』 2, pp. 347~348)¹⁸⁾

위의 기록에 따르면, 政案은 高麗 전기뿐만 아니라 崔瑀가 집권한 후에도 한결같이 인사 처리를 위한 기준 자료로서 작성·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政案에 기재되는 勤務期間·勤怠·功過·才否 따위의 항목이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能文”·“能吏”의 여부가 적어도 崔瑀代의 인사 기준으로서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政案의 네 항목이 곧 “能文”과 “能吏”의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위 네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能文”·“能吏”에 관계되는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能吏”의 여부는 勤怠와 功過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D)③ 新定諸州府員奉行六條 一察民庶疾苦 二察黑綬長吏能否 三察盜賊姦猾 四察民犯禁 五察民孝弟廉潔 六察吏錢穀散失 (『高麗史』 75, 選舉 3 選用守令 顯宗 9年 2月)

④ 守令考績之法 以田野闢·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賊息五事 爲殿最 其遷任者必待新官交付 去任朝參 (同上, 禑王 원년 2月 敕)

위 (D)④에서 高麗 말에 守令을 考課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모두 실무 능력에 관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③을 보면, 그것이 高麗 전기 이래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守令을 평가하는 여섯 혹은 다섯 가지 사항은 政案에 勤怠·功過 등으로 표시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의 能否가 근무 기간 중의 업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여기서 “能吏”라고 한 것에서의 “吏”

18)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高麗史』 75, 選舉 3 銓注 條에 실려있다.

가 모든 관리들의 실무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떠올리면, “能吏”의 여부는 지방관 뿐만 아니라 중앙의 胥吏·百官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의 인사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 19) 여기서 근무 기간도 “能吏”와 관련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므로, 일단 무시해도 좋을 듯싶다. 崔滋의 경우 그가 “文吏俱不能”(A)③으로 최하였기 때문에 아예 근무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才否가 “能吏”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才否는 아무래도 문장의 能否와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表〉

人 名	能 文・能 吏	典 據
崔 均	文才吏幹俱優	「高麗史」99, 崔均傳
柳 光 植	以文雅歸吏事	柳光植墓誌, 「朝鮮金石總覽」上, p. 156
金 仁 鏡	文武吏才俱瞻	「高麗史」102, 金仁鏡傳
朴 恒	能文章 長於吏才	앞의 사료(C)
許 珙	以文才吏幹	앞의 사료(B)①

위의 〈表〉는 각종 기록에 나오는 “能文能吏”한 관리들을 정리한 것이다(주로 西江大學校 大學院 박환의 조사에 의하였음.) 그 중 “能吏”는 “吏幹”·“吏才”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 辭典的 의미가 관리로서의 재간과 능력 혹은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솜씨이므로(「大漢和辭典」2, pp. 838~839), 그것은 곧 관리의 실무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宋代 文臣 관료의 승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였던 “其才”가 관리로서의 행정 능력을 의미하였음(申採湜, ‘宋代 文臣官僚의 陞進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8·9, 1975, pp. 167~176)도 참조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能文”은 주로 “文才”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李佑成은 “能文能吏”라고 하여 兩者가 대등한 것으로 파악한 듯한데(다음의 註 20)참조), 앞의 사료 (A)③에서 “文而不能吏”가 “吏而不能文”보다 앞서는 것을 보면 여전히 “能文”이 더 중요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0) 李佑成은 특히 “能吏”에 주목한 바 있다. 즉 “吏”는 文臣 지배 하에서 그리고 武臣 집권 하에서 줄곧 차별 대우를 받아왔으나, 武臣政權에 의하여 “文”·“吏”가 동일 대상으로 파악되고, 나아가 “文”·“吏”의 융합에 의한 “能文能吏”의 새로운 官人型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앞의 논문, pp. 21~25). 이와 같은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吏”를 胥吏 혹은 鄉吏의 실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能吏”는 高麗 전기부터 모든 관리의 인사기준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能吏”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각 관청의 상관 혹은 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각 관청의 보고를 기초로 吏部·兵部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政案의 항목 가운데 勤怠·功過였다고 생각된다.²¹⁾

한편 “能文”의 여부가 政案에 才否로 표시되었을 것임은 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 있다.²²⁾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었으며, 그리고 어떠한 기관에 의해 평가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의연히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다음 사료에서 어느 정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化成天下 文之時義 大矣哉 豫恐業文之士 纔得科名 各牽公務 以廢素業 其年五十以下 未經知制誥者 翰林院出題 令每月進詩三篇·賦一篇 在外文官 自爲詩三十篇·賦一篇 歲抄附計吏以進 翰林院品題 以聞(『高麗史』3, 成宗 14年 2月 敕曰)

위의 기록에 따르면, 成宗은 중앙과 지방의 文臣들로 하여금 매월 혹은 매해마다 상당량의 詩·賦를 짓도록 하고, 그것을 翰林院으로 하여금 品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심사 결과를 王에게 奏聞하도록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品題가 그 대상의 次序를 정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면,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成宗이 문장을 짓는 것을 文臣의 “素業”

21) 그런데 崔滋가 지방관으로서 “以政最聞”(A)①)하였고, 給田都監 錄事로서도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A)④), 왜 學識로서는 그러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 필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후 정권과의 친소 등이 능력보다 우선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朴龍雲, ‘高麗時代의 海州崔氏와 坡平尹氏 家門分析’, 『白山學報』 23, 1979, pp. 135~136 참조.

22) 앞의 註 19)참조.

23) 崔齊淑은 이것을 翰林院이 登第 後 知制誥를 겸지 않은 文官의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앞의 논문, p. 23).

하지만 “品題”가 그 대상의 次序를 정하는 것인 이상, 그것이 考課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翰林院이 高麗 초기의 대표적인 文

이라고 하고 있음도 역시 이를 알려준다고 여겨진다. 즉 위 (E)의 “公務”는 政案의 勤怠・功過((D)②), 그리고 守令을 考課하는 여섯 혹은 다섯 가지 기준((D)③・④)과 연결되고, 반면에 “素業” 곧 “能文”이 바로 政案의 才否와 관계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文臣月課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崔瑀가 인사의 기준으로 삼았던 “能文”이 문장을 짓는 능력이었음을 고려하면, 崔瑀代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²⁴⁾

한편 위 사료(E)에 의하면 당시 月課의 심사를 담당한 것은 翰林院 소속의 관리였다. 그렇다면 崔瑀代에 “能文”을 심사한 것도 역시 文翰官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현재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료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앞의 사료(A)③이 그런대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적인 경우였을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能文”의 여부를 심사한 유일한 예이기 때문이다.

이제 李奎報가 과연 어떠한 자격으로 崔滋 등의 “能文”을 심사하였을까

翰機傳였고(李基東, 앞의 논문, p. 278 및 邊太燮, 앞의 논문, pp. 184~188), 光宗의 개혁을 주도한 중심 인물들이 翰林院 學士였음(李基東, 앞의 논문, pp. 267~277)을 고려하면, 成宗代에 翰林院 소속의 學士들이 인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비록 朝鮮 시대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지만, 月課(다음의 註 24)참조)를 文翰官이 심사하고, 그것이 考課에 반영되는 경우를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仁宗 20年) 承文院啓曰 文臣之朔製月課 寔我祖宗右文作士之盛意 而至宣祖朝 又選文官之有才者 名以機院製述官或稱別知教數 時命製述 考其能否 今宜限通政以下 隨才博選 第加勸課 以尊先朝培養之方 從之(『增補文獻備考』 201, 選舉考 18).

- 24) 『增補文獻備考』 184, 選舉考 1 成宗 15年 條의 註에 의하면 文臣月課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高麗 시대에 특히 文(章)이 중요시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이 月課制가 全期에 걸쳐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 사료 (E) 외에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崔瑀가 인사 기준으로 “能文”을 내세웠다는 것은 적어도 당시에 月課制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당시 月課制가 시행되었다면, “能屬文”하여 科擧에 합격하였고((A)①), 歌・詩로 당대의 문장이인 李奎報에게 인정받은((A)③) 崔滋가 왜 “不能文”((A)②)으로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앞의 註 21)참조.

궁금해진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험이 행하여진 시기와 그 대상 인물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F) 後數年 公(李奎報)叙國子祭酒 予(崔滋)爲學諭(「補閑集」中;「高麗名賢集」2, p. 121)

李奎報가 國子祭酒가 된 것은 高宗 11년(1224)이었다.²⁵⁾ 따라서 崔滋는 高宗 11년에 國學的 學諭가 되어, 그로부터 10년 후인 高宗 20년(1233)에 (A)③에 보이는 바와 같은 시험을 친 것이 된다.²⁶⁾ 당시 李奎報가 거친 관직을 그의 年譜²⁷⁾에 의하여 정리하면 다음 <表>와 같다.

<表>

	一 般 職	文 翰 職
高宗19年(1232)9月	留守中軍兵馬使	
20年(1233)6月	樞密院副使・左散騎常侍	翰林學士承旨／寶文閣學士
8月	直樞密	寶文閣學士
12月	知門下省事・戶部尙書・判禮部事	(集賢殿大學士)

한편 앞의 (A)③를 보면 당시 崔滋와 金堧는 모두 문장으로 알려진 인

25) 「李相國集」年譜 甲申年; 「高麗名賢集」1, pp. 7~8.

26) 그런데 「李相國集」年譜에 의하면 그는 高宗 11년에 試國子祭酒가 되고, 13년에 祭酒即眞이 되었다(甲申年 條 및 丙戌年 條; 「高麗名賢集」, pp. 7~8). 이중 高宗 11년을 취한 것은 金堧의 경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高宗朝 擢第二人及第 知貢舉金仁鏡(中略)補定遠府司錄 同縣人黃閔寶挾德 攜世累 訴有司 權臣崔怡重其才 營救不得 改濟州判官(「高麗史」106, 金堧傳) 먼저, 金堧가 科擧에 합격한 것은 高宗 19년 5월이었다(「高麗史」173, 選舉 1 科目 1 選場). 定遠府司錄은 그의 初職이며, 그가 濟州判官이 된 것은 高宗 23년이다(金堧墓誌, 「韓國金石文通補」, p. 207). 그렇다면 위에서 崔瑀가 金堧의 재능을 중히 여겼다는 것은, 그가 “及第”로서 崔滋 등과 더불어 본 시험((A)③)의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金堧가 그 시험을 치른 시기는 그가 “及第”였던 때 즉 高宗 19년에서 定遠府司錄이 되기 전이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27) 「李相國集」年譜 壬辰年 및 癸巳年; 「高麗名賢集」1, pp. 8~9.

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시험 대상이 되었던 李需·李百順 등도 역시 그러한 인물들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李奎報가 이들의 文才를 심사하였던 것은 그가 文翰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李奎報는 翰林學士承旨 혹은 寶文閣學士의 자격으로 이들의 文才를 심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는 그 대상 인물들이 당시 유명했던 문장가들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그러하다. (A)③에서 崔瑀가 李奎報에게 그를 대신하여 文翰을 맡을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묻고, 崔滋 등의 文才를 시험하도록 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당시 文翰官이 “能文”의 심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崔瑀政權下 文翰官의 政治的 位置

필자는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文翰官이 崔瑀代에 인사 행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文翰官이 崔瑀의 측근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文翰官이 갖는 정치적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가 궁금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부터 文翰官이 崔瑀의 인사 행정에 관여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A)③에 나오는 시험 시기에 대한 앞서의 검토를 통하여 일단 그 시기를 高宗 11년 이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崔滋가 高宗 11년 이후 약 10년 동안 쓰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文吏俱不能”((A)②)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崔瑀는 高宗 8년에 參知政事·吏部尙書·兵部尙書·判御史臺事

에 임명되었다.²⁸⁾ 이는 그가 합법적으로 銓政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단 文翰官이 崔瑀의 측근으로서 인사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高宗 8년 경이었다고 보아 무방하지 않을까.

이상의 추측이 허락된다면, 이제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에 눈을 돌리는 것이 유익할 줄 안다.

G) 初忠獻授人爵 視賂多少 時求八品者甚衆 而官制少 於是 陞五部錄事爲八品 又史官·翰林之祿 過於五部錄事 亦陞爲八品(高宗 7年) 怡以爲先王增史翰之祿 所以崇儒 祿已增矣 何必改官制 遂復以史翰·五部錄事並爲權務官(『高麗史』129, 崔忠獻傳 附 崔怡傳)

현재 위 조치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갑자기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崔瑀가 崔忠獻에 의해 변화된 관제를 高麗전기의 그것으로 복구시키면서, 先王의 제도에 의한다고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崔瑀가 인사 기준으로 高麗 전기 이래의 “能文”과 “能吏”를 제시하고, “能文”의 심사를 文翰官에게 맡긴 것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武臣亂 이후 관제와 인사 기준 등이 문란해진 상황²⁹⁾에서 高麗 전기의 그것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집권이 崔忠獻代와는 다른, 정당한 것임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³⁰⁾

하지만 崔瑀 집권 초기의 인사 정책이 위와 같이 名分만을 중요시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崔瑀는 집권하자마자 崔忠獻 세력으로서 자신에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였는데,³¹⁾ 본 논의와

28) 『高麗史』22, 高宗 8年 12月 甲午 條.

29) 官制의 문란에 대한 예로서는 앞의 사료 (G)를 들 수 있다. 한편 인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武臣亂 이후 武班 출신들이 近侍職·外官職은 물론이고 文翰職까지 겸하는 경우가 있었음(邊大燮,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史學研究』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1, pp.322~327)이 지적될 수 있다.

30) 다음과 같은 조치도 이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忠獻死 怡以其所畜金銀珍玩 獻王(『高麗史』129, 崔忠獻傳 附 崔怡傳)

② 明年(高宗 7年) 又以忠獻占奪公私田民 各還其主 且多拔寒士 以收人望(同上)

관련하여 특히 다음이 참조된다.

- H) ① 平章事琴儀·鄭邦輔辭職 加儀壁上功臣 仍令致仕 貶邦輔爲安東副使 文惟弼爲安西副使 於是 瀆貨之風 稍息 (『高麗史節要』 15 高宗 7 年 正月)
 ② 忠獻 自兼吏·兵部之後 常往來二部銓注 至是 在私第 與吏部員外郎盧瑄 注擬文武以奏 王領之 二部判事但檢閱而已 瑄 忠獻外戚 (中略) 忠獻甚愛之 氣勢日熾 賄賂公行 及出補安西都護副使 以琴儀代之 (同上, 14 神宗 5 年 3 월)

우선 琴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H)②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盧瑄의 뒤를 이어 崔忠獻 정권의 인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崔忠獻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崔忠獻이 죽은 후 약 6 개월만에 致仕하였다((H)①). 『高麗史』 102 琴儀傳에 따르면 그가 致仕한 이유는 나이(68 세) 때문인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H)①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는 명예 퇴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록에 의하면, 琴儀는 瀆職으로 처벌된 鄭邦輔와 더불어 辭職하였다고 한다. 또한 琴儀·鄭邦輔 그리고 文惟弼 등이 致仕 혹은 폄출된 후 瀆職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琴儀에게도 瀆職의 혐의가 걸렸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명예 퇴진이지만, 실제로는 瀆職에 대한 책임을 물어 致仕시킨 것으로 해아러지는 것이다.

31) 예전대 다음이 참조된다.

高宗 六年 (10 月) (中略) 崔怡聞其言 以安永麟·柳庇·俊弼·李貞壽·崔守雄·李世芬·高世霖·洪文敘·李允恭·崔孝全·宋自恭·李元美·崔謐等 嘗誚事忠獻 成爲按察 或爲分道·分臺·監倉使 或求巨邑 侵漁無厭 分配諸島 (『高麗史』 131, 韓恂·多智傳)

이 조치는 崔瑀가 韓恂·多智의 亂이 지방관의 친달이 심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安永麟 등은 모두 “嘗誚事忠獻”하였다고 한다. 즉 이들은 崔忠獻에게 충성을 바친, 崔忠獻派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이 조치가 崔瑀가 정권을 잡은 직후에 나온 것임을 염두에 두면, 安永麟 등이 유배된 것은 이들이 “侵漁無厭”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崔忠獻 세력으로서 崔瑀의 집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한편 (H)①의 瀆職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앞의 사료 (G)나 (H)②의 盧瑄의 경우를 염두에 두면, 琴儀가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瀆職의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鄭邦輔나 文惟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³²⁾

이제까지의 검토에 큰 무리가 없다면, 崔瑀는 집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崔忠獻 정권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을 배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崔瑀의 인사 행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특히 文翰官과 관련하여, 崔滋·金坵 등의 “能文”의 여부를 심사했던 李奎報가 떠오른다.

I) (高宗 7年) 夏六月 以試禮部郎中·起居注·知制告見召 七月 至自桂陽 前年九月 晉康公薨 嗣子相國代秉政權 故有是令 十二月 遷試太僕少卿 仍起居注 作謝表 (『李相國集』年譜 庚辰年; 『高麗名賢集』1, p. 7)

위 기록에 따르면, 崔瑀는 정권을 잡게 되면서, 高宗 6년에 崔忠獻의 탄핵을 받아 桂陽都護府副使로 폄하되었던³³⁾ 李奎報를 開京으로 불렀다고 한다. 李奎報는 開京에 돌아온 그 이듬해 곧 高宗 8년에 寶文閣侍制·知制誥에 除援되고 있다.³⁴⁾

그런데 앞서 필자는 高宗 8년 경에 崔瑀가 “能文”·“能吏”의 인사 기

32) 文惟弼은 高宗 3년에 樞密院使였으며 (『高麗史節要』14, 高宗 3년 4월), 鄭邦輔는

崔忠獻移入別第 劔戟兵衛 彌滿數里 朝士追隨者甚衆 前此 無宰相從之者 至是 簽書樞密院使琴儀·樞密院副使鄭邦輔始從之 時人鄙之(同上, 2년 5월)에서 알 수 있듯이, 琴儀와 더불어 崔忠獻에 밀착되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도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瀆職의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당시의 瀆職은 대부분 인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도 드는 것이다.

한편 (H)①의 조치는, 단순히 瀆職者를 숙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崔瑀가 집권한 후 崔忠獻의 측근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3) 『李相國集』年譜己卯年; 『高麗名賢集』1, p. 7.

34) 『李相國集』年譜 辛巳年; 위의 책, p. 7.

준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또한 그 중에서도 “能文”의 심사는 文翰官이 담당하였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李奎報는 이미 인사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崔瑀는 정권을 잡은 후 崔忠獻의 측근으로 인사를 담당하였던 琴篋 등을 배제하고, 대신 자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³⁵⁾ 李奎報로 하여금 인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가 허용될 수 있다면, 이제 李奎報가 崔瑀의 인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李奎報 혼자만이 “能文”을 심사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리함으로써 당시 인사 행정에 참여했던 文翰官들의 윤곽을 막연히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 조건으로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李奎報가 관리들의 “能文”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崔瑀에 대한 李奎報의 충성 내지는 지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崔瑀의 측근으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에 대한 충성 혹은 지지를 전제로 하였을 때만 가능했을 것이다.³⁶⁾

35) 李奎報는 熙宗 4년에 崔忠獻에 의해 直翰林院에 權補되었으나(『李相國集』年譜 丁卯年; 『高麗名賢集』1, p. 6), 오히려 崔瑀와 밀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高宗 即位年)十二月 晉康侯嗣子相國大設夜宴 召摺紳貴介赴座 公獨以八品微官 蒙召預焉 及夜半 相國謂曰 聞君走筆 未之見也 今日試之 何如 回使李仁老唱韻 多至四十餘韻 以燭爲題 命名妓研墨 及成 相國大噓 憤不已 明日 將其詩詣府 由於侯 請召試其能 侯初不肯之 再三白之 然後召之(中略)使琴相國唱韻 多至四十餘韻 筆不容一瞬 侯嘆息至重涕 及欲退 侯曰 子若望官 即言所志 公曰 吾今八品 除七品 足矣 相國矚目之 意欲令直望參官 其日 相國還第 召讓曰 子之望官 何劣也 何不以參官爲望耶 公曰 予志也(『李相國集』年譜 癸酉年; 『高麗名賢集』1, p. 6).

위에 의하면, 崔瑀는 李奎報의 文才를 높이 평가하여 崔忠獻으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후 李奎報가 출세하는 데에는 이때 崔瑀의 추천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李奎報가 그후에도 계속 崔瑀의 비호를 받았을 것임은 위 (I)를 통하여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6) 앞의 註 35)에서 살핀대로 李奎報가 崔瑀의 도움으로 출세하였음을 고려하면 그의 崔瑀에 대한 충성 내지는 지지를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당대의 문장가이면서 동시에 崔瑀 정권을 지지하였던 文翰官들이 “能文”을 심사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能文”을 심사하는 기관이 무엇이였을까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사 행정의 일부이고, 더우기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사 행정에 참여하는 文翰官들이 崔瑀에 대한 충성을 그 조건으로 하였음을 고려하면, 그 기구가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³⁷⁾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書房이다.

J)① 怡門客多當代名儒 分爲三番 遞宿書房 (『高麗史』129 崔忠獻傳 附 崔怡傳)

② (熙宗 4 年) (上略) 然每歲史館·翰院·國學等儒官薦人 常以公(李奎報)爲首 (下略) (『李相國集』年譜 丁卯年; 『高麗名賢集』1, p. 6)

書房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J)①의 “名儒”가 어떠한 인물들이나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J)②의 “儒官”은 文翰官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史館·翰(林)院은 高麗의 대표적인 文翰機構인 것이다.³⁸⁾ 따라서(J)①의 “名儒”는 文翰官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괜찮을 듯하다. 한편 이들이 崔瑀의 門客인 이상, 주인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는 인물들이었다고 여

37) 앞의 사료(E)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翰林院에서 “能文”의 심사를 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맡은 것이 政房이라는 私的 기구였음을 생각하면, “能文”의 심사도 국가의 공식 기구가 아닌 私인 기구에서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38) (J)②에 이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時方構茅亭 命李仁老·李元老·李允甫及公作記 仍使儒官宰相四者科 公爲第

위에서의 “儒官宰相”은 文翰職과 宰相職을 겸임한 것으로 해석된다(혹 “儒官”과 “宰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儒官宰相”이 茅亭記를 심사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儒”는 經學이나 道學(性理學)이 아닌 문장을 짓는 것의 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註 15)도 참조될 수 있다.

겨진다.

그렇다면 바로 書房에 소속되어 있었던 “名儒”들이 “能文”을 심사하였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인사 행정에 참여한 文翰官과 書房의 “名儒”가 문장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과崔瑀에 대한 충성이라는 면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도록 하자.

J)③ 元正冬至 諸牧·都護府 例修狀 賀相府 (中略) (晉陽)公摠諸州·牧·府賀狀 使門下文人科第之 尙(州)牧皆爲第一 (『補閑集』中; 『高麗名賢集』 2, p. 119)

위 (J)③에서 賀狀을 科第한 “門下文人”은 書房에 속한 文士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地方官衙의 賀狀을 심사하였음을 염두에 두면 그들은 아마도 (J)①의 “名儒”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J)③에 따르면 賀狀의 심사에서 尙(州)牧이 모두(반반히)일등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 관청에서 元正과 冬至에 賀狀을 올리는 것이 常例이듯, 書房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도 그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서의 심사 대상은 文臣月課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지만, 書房에서 매년 지방 관청의 賀狀을 심사하였다는 것은 書房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書房 소속의 文士 곧 文翰官이 文臣의 月課를 심사하였다고 추측되는 것이다.³⁹⁾

39) 書房에 대해서는 金庠基가 文史의 任에 종사하는 한편 分番更直의 宿衛의 任을 兼했던 것으로 보고, 政房의 必關亦是 書房의 文士 중에서 銓法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 구성한 것이라고 한 이후(앞의 논문, pp. 235~238), 대체로 이 전례가 받아들여지고 있다(예컨대 閔丙河, ‘崔氏政權의 支配機構’, pp. 167~173). 다만 Edward J. Shultz가 書房을 崔氏政權의 군사전략 수립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보았을 뿐이며(앞의 논문, p. 14), 書房이 인사 행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본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書房이 “能文”을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할 경우,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能文”·“能吏”의 인사 기준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高宗 8년, 늦어도 11년 경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書房이 최초로 기

지금까지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崔瑀代에 인사 행정을 담당한 私의 기구로서, 政房 외에도 書房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필자는 崔瑀가 제시한 “能文”과 “能吏”의 인사 기준을 중심으로 崔瑀정권 하에서의 文翰官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能文”은 문장력의 유무와 관련된 인사 기준이었으며, “能吏”는胥吏로부터 모든 관리들에게 요구되는 실무 능력에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兩者의 심사는 자기 이루어졌다. “能吏”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각 관청에서 이루어졌으며, 政案의 勤怠·功過의 항목이 이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반면에 “能文”의 여부는 文翰官의 月課를 심사하여 결정하였으며, 政案에는 才否로 표시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들은 최종 결정권자인 崔瑀에 의해 종합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能文”의 심사를 담당하였던 文翰官의 정치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崔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文翰官이 소속된 기구가 바로 書房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보았다. 결국 高麗 전기에 있어 王權의 신장을 뒷받침하던 文翰官들은 書房이라는 崔瑀의 私의 정치 기구를 통하여 崔瑀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록에 나타나는 것은 高宗 14년으로(『高麗史』 129, 崔忠獻傳 附 崔怡傳), 그 설치 시기가 高宗 11년 이후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사 의 私의 처리가 이미 崔忠獻 때부터 시작되어, 결국 崔瑀의 政房 설치가 이러한 銓政의 私의 처리를 제도화한 것과 비슷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